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느낌과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몸의 존엄성과 성적 욕구를 존중하는 당당한 성,
나와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성,
주체적으로 성적의사를 결정하고 향유할 수 있는 즐거운 성을 만들어 갑니다.

왜곡된 성 문화와 성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드러내는 성, 토론하는 성,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개념을 확장합니다.

성폭력 상담 안내

전화상담 02)335~1858 월~금 9:30~17:30

면접상담 전화상담 후 예약

상담내용

성폭력 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

성(Sexuality) 성지식, 성적의사소통 등

지원내용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상담

법적 지원 법률 정보 제공, 경찰 조사 및 법정 동행, 법률 구조 지원

의료적 지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성폭력피해정황검사 및 치료비 지원

기타 지원 보호시설(쉼터) 연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3층

전화 02-739-8858 팩스 02-736-5766

www.fc.womenlink.or.kr



아동안전지킴이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 차원시스템으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활동이다.

아동지킴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 지원 매뉴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아동지킴이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으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아동지킴이 활동

녹색어머니회 (8:00-9:00)

학교의 등굣길에 교통안전 지도

배움터지킴이 (학교운영 시간)

등하교 안전지도, 외부인 출입통제, 상담

아동안전수호천사 (영업 시간)

한국아쿠르트 여사님, 우편집배원 업무 중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 및 신고

아동안전지킴이 (14:00-18:00)

퇴직경찰관, 노인회로 구성. 담당지역 순찰 및 상황발생시 신고 및 현장파악 등 초기대응

어머니폴리스 (12:00-16:00)

학교의 하교길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신고 등 초기대응

학교보안관 (6:00-22:00)

교내외 순찰, 등하교 지도, 안전보호

실버킵 (학교운영 시간)

등하교 안전지도, 아동유괴예방



마포구 아동지킴이 현황

아동지킴이집 138곳(경찰서 소관)

학교보안관 21곳 42명(초등학교배치)

실버킵 11개 학교 120명(마포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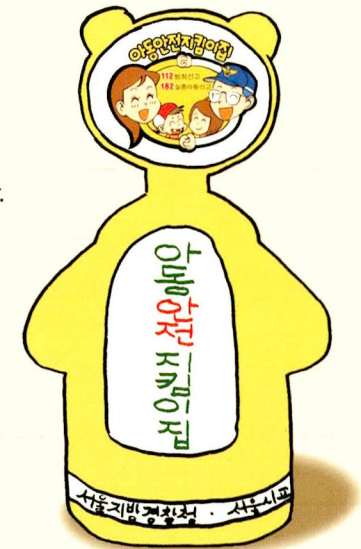
배움터 지킴이 57개 학교 190명(교육지원청 소관)

아동지킴이집이란?

2008년 아동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국의 초등학교나 공원, 주택가 부근의 문구점, 편의점, 세탁소, 약국 등의 상점을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고 곰돌이 모양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아동지킴이집에서 하는 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관할 경찰 지구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임시로 보호하며 112 신고 등으로 경찰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지킴이집 외국 사례

오스트레일리아

1979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세이프티 하우스 (Safety house) 운영

캐나다

1986년부터 거주 지역의 블록별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는 '골목 부모'라는 뜻의 '블록 페어런트(Block parent)' 운영

아동지킴이 국내 활동사례

아동지킴이집의 신고로 2009년 9월까지 납치·유인범과 성추행범, 강도·갈취범과
폭력사범 등 총 338건에 478명의 범인 검거, 폭력·실종 등 총 309건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

길 잃은 아동 보호

2008. 5.15 울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3세 아동을 아동지킴이집 업주가 발견하고
아동을 보호하면서 지구대에 신고해 부모에게 연계

성폭력 마수범 신고

2008.6.10 귀가 중인 14세 여아를 성폭력 목적으로 차량에 태우려는 피의자를
어머니폴리스의 신고로 검거

강제추행 가해자 신고

2008. 7.22 성인 남자가 8세 여아를 강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이 아동지킴이집에
피해상황을 알려, 업주가 피해아동을 보호 한 후 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해서 피의자 검거

아동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폭력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접촉 자체는 성폭력으로 처벌받는다.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징

아동의 경우 평소 친밀하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하는 경우 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가 주변에 알리면 안된다고 협박해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악몽을 꾸는 등 우회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아동성폭력 피해자 중에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 징후를 일반화해서 적용하기 보다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아동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 특정 사람, 물건에 대한 두려움 · 행동, 학습 수행 능력 퇴행 · 수면·섭식 장애 · 학교 적응 및 사회관계 문제 · 우울 및 불안 행동 등 낮은 자존감	· 설명할 수 없는 생식기 손상 · 외음부 질환 또는 분비물 · 야뇨증 등 배변 장애 · 항문 불편감 호소 (예: 열상, 통증, 출혈) · 배뇨시 통증, 요로 감염증 · 구강 질환 · 성병 · 임신

아동성폭력에 대한 오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흉악범죄?

아동성폭력을 떠올리면 언론에 사건화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흉악범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통계를 분석해 보면 가해자의 80%가 가족(친부, 의부, 오빠, 사촌, 할아버지, 큰아버지, 고보부, 이모부 등), 주변 사람(교사, 교직원,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동네사람, 경비 등) 등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이다. 따라서 평소 마을 공동체 안에서 폭력·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아동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은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

아동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된 범죄 신고율 자체가 낮고, 신고된 후에도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정책에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07년 기준)

아동성폭력 범죄 1,839건 중 무기징역 0.4%, 벌금형 42.1%, 집행유예 30.5%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의 경우 집행유예 23.2%, 벌금형 18.8%

따라서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시 아동이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지킴이가 활성화 되면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을 조속히 발견·보호·신고함으로써 사전에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아동성폭력예방 된다?

아동성폭력 가해 시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피해를 알게 됐을 때 피해자를 돕는 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B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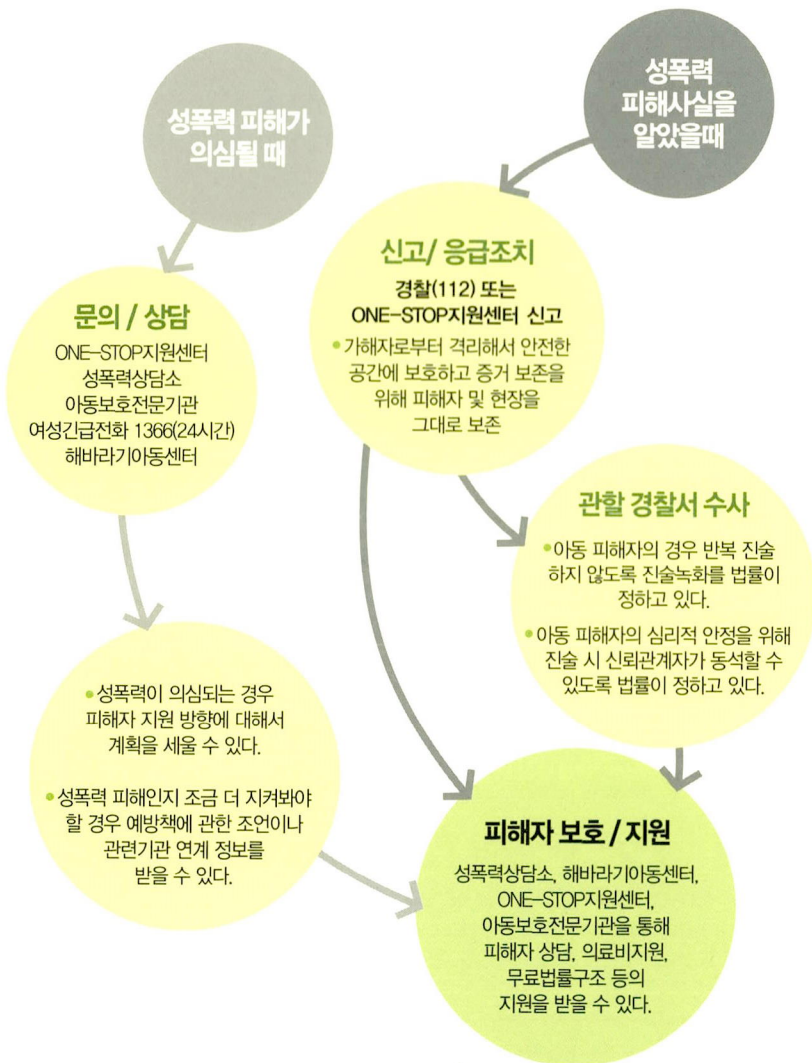
(2011.6.2, 충청투데이, 조재근기자)

가해를 목격했을 때 주변에서 제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 2,3의 가해로 연결 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고립감으로 정신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반드시 가해자 제지나 신고가 필요하다.

어릴 때 일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통해 가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이후에 위험하거나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때 부모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아동지킴이의 역할

- 피해 목격 시 신고
- 아동의 구조 요청 시 신고
-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할 때 까지 보호
- 아동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독이기
- 피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피해 아동과 대화 할 때 기억해 주세요!

- 내가 어리다고 나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아 주세요.
-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 나에게 왜 그 때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마세요. 그 일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 나의 이름, 얼굴, 학교 등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아주세요.
- 나를 또 다른 위협과 폭력 속에 놓아두지 마세요.
-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질문해 주세요.
- 무조건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로 답하라고 하지 마세요.
- 그 일과 관련된 것 말고 나에 대해 다른 것을 자주 묻지 마세요.
- 그 일을 자주 기억하고 말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한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게 싫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 다른 어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 앞에서 말이 안나와요.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해주세요.
-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4 중 발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형사적 방법

국가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 형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친족관계에서의 강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 누구나 고소가 가능하다.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배상 명령을 받아 낼 수 있다. 배상 판결이 있어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앞서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 판결이 난 후 민사소송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머리카락, 손톱 보존
- 피해 직후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 및 몸 전체가 나온 사진과 다친 부위 사진 찍기
- 피해 장소에 가해자의 지문, 머리카락, 음모, 땀, 정액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보존
- 강간 피해인 경우 씻지 말고 곧 바로 성폭력상담소나 ONE-STOP지원센터에 연락하고 성폭력응급키트로 증거 보존
- 증거보존 시 공기가 통하는 종이봉투에 보관해서 경찰서에 제출
- 가해자의 특징이나 했던 말 등 기억나는 모든 것 기록해 두기
- 피해 발생 시간, 장소,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기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2010년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처벌이 강화되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 성폭력피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성인이 되어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친족(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내 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0년 이상 유기징역.
-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7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상 감경(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규정인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적용되지 않음. 즉, 성폭력범죄에 있어 '술 때문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미성년자(만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성년까지 정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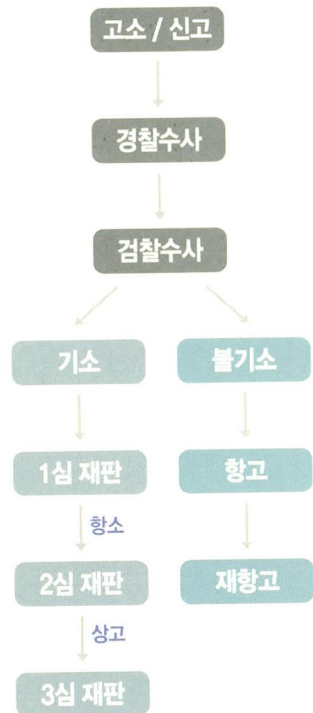
- 형법상 감경(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규정인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적용되지 않음. 즉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있어 '술 때문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미성년자(만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성년까지 정지.
- 법원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이 공개.
- 성범죄로 형을 종료, 유예, 면제된 자는 그 날로부터 10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제한.

형법

-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기존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상향.
- 형의 가중(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지르 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을 기존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
- 강간, 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 신설.

고소 후 수사절차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면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하게 되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진행된다.



경찰수사

고소장이 접수 되면 피고소인(가해자)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경찰 수사는 1~3개월 정도가 걸린다.

검찰수사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송치 받아 필요 시 추가 진술, 증거확보 등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는 일, 불기소를 결정한다. 불기소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수사는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법원 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린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찰·검찰·법원 동행 및 진술 동석
- 경찰·검찰·법원 상담확인서, 의견서, 진정서 제출
- 법률정보제공 및 무료법률구조 신청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

모든 어린이는 나이, 성별,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 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심신을 해치는 행위를 가할 수 없다. 모든 어린이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어린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만일 성적 폭력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니며, 어린이는 책임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더불어 어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로 인해 다른 권리들이 침해 받지 않게 하고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자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상의 권리를 존중받고, 나아가 원치 않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와 환경 속에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부모 · 보호자 유의사항

- 아이의 말을 차분하게 듣는다.
-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확인하며 안심시킨다.
-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리한다.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는다.
- 아이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해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 가능한 모든 자료들은 수집, 녹취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와 사건에 대해 대화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나한테도 잘못이 없는지 의심하거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혼내지 마세요.
- 나한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할거예요.
- 나를 이상한 아이처럼 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한게 아니예요.
- 나한테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어른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 힘들데 참으라고, 잊어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다고 막 표현할 때, 나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 내 마음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아프지 않아 보인다고 안 아픈게 아니예요.
- 내가 힘든 걸 말하고 싶을 때 옆에서 따뜻하게 들어주세요.
-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 나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나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요.
- 나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친구나 선생님들이 나에게 있었던 나쁜 일을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 그 때 있었던 나쁜일로 친구들과 같이 놀기 어렵거나 공부하기 어렵고, 아프거나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4 중 발췌

긴급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종류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7층	02)3274-1375
ONE-STOP 지원센터	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	02)3400-1117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병원 신관 1층	02)870-1700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3층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02)338-5801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69-2 3층	02)422-1391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이유명호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고려아카데미빌	02)719-4231
	동교신경정신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5-1	02)333-3572
	서울의료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3430-0201
경찰서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88번지	02)3149-6248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4층	02)713-6039
	서울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02)707-3750

마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는

나우리가정폭력상담소 · 마포경찰서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마포구녹색어머니회 · 마포구보건소
마포구여성성단체연합회 · 마포구의회 · 마포구청 · 마포구청소년지도협의회 · 마포구청소년지원센터
마포소방서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아름돌
이화여자대학교성산종합사회복지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